

상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최준선*

차 례

- I. 서 언
- II. 우리 회사법의 계수와 발전
 - 1. 일본법을 통한 미국법의 계수
 - 2. 한국회사법의 최근의 개정 동향
 - 3. 미국법에의 접근현상에 대한 평가
- III. 2008년 상사법 분야의 발전
- IV. 한국회사법의 개정방향
 - 1. 창업절차의 간소화
 - 2. 지배구조의 개선
 - 3. M&A의 활성화
 -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 V. 결어 - 국제적 환경에의 대응
 - 1. 기업회계혁명
 - 2. E-Discovery제도에 따른 대응
 - 3. U.N. Global Compact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 언

2008년은 우리나라의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한국 상법이 시행된 지 5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상법이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상사법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법률제정속도보다는 더 빨리 세계 및 한국의 경제환경은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진보된 상사법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지난 55년간 우리 상사법제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 회사법의 계수와 발전

1. 일본법을 통한 미국법의 계수

한국의 상법은 일본상법에서 유래되었고, 일본상법은 독일상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우리 상법과 회사법도 일본법과 마찬가지로 독일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우리 회사법이 독일법을 모범으로 한 의용상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와 수권자본제도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그러나 여기서 영미법이라 함은 과연 영국과 미국의 어떤 법률을 두고 말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상법은 독일인 Hermann Rösler(1834~1894)의 초안을 바탕으로 1890년에 제정되었다. 일본은 1899년에 신상법을 제정하였는데, 1897년에 제정된 독일상법과 유사하게 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의 4종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역시 1892년의 독일 유한회사법과 유사하게 1938년 유한회사법을

1) 최준선, 『회사법』, 2008, 19면;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상)』, 2006, 21면; 손주찬, 『상법(상)』, 2004, 423면; 이기수·최병규·조지현, 『회사법』, 2008, 34면.

따로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이 1962년 상법제정 이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던 의용상법이다. 일본 회사법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개정은 1950년에 일어났다. 즉, 1950년 개정법은 수권자본제도·무액면주식제도·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독일법적 기초에다 영미법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였다.

1950년!

이 때 비로소 영미법이 부분적으로 일본법에 계수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1950년에 상법을 개정할 때 주로 참고한 법률은 무엇이었나? 미국에서는 미국법조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회사법 위원회가 편찬한 1950년의 모범사업회사법(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이 있다.²⁾ 그러나 일본상법이 MBCA를 계수하였을 리는 없다. 왜냐하면 MBCA도 바로 1950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MBCA초안 준비작업은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ABA의 회사법 위원회는 Illinois주의 회사법(the corporate statutes of Illinois)에 기초를 두고 초안을 마련하였다.³⁾ 여기서 MBCA가 Illinois주 회사법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Illinois주 회사법은 1933년에 만들어진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이다. 1950년 일본상법의 회사편의 개정내용도 바로 이 Illinois주 회사법의 영향을 받았다.⁴⁾ 즉, MBCA와 1950년의 일본회사법의 내용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상법도 1950년에 개정된 일본상법을 모방하였으니,⁵⁾ 결국 우리 회사법도 Illinois Business

2) MBCA는 ABA의 기업법 분과(the Section of Business Law) 소속 회사법 위원회(the Committee on Corporate Laws)가 만든 것이다. 1984년에 대폭 개정되어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가 되었는데, 델라웨어주 및 뉴욕주 등 여러 주의 회사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MBCA는 현재 미국의 35개 주의 회사법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William J. Carney, "The Production of Corporate Law", 71 S. Cal. L. Rev. 715, 731, 743 (1998)).

3) William H. Painter, "Introduction: Symposium on the 1983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1985 U. Ill. L. Rev. 635, 635.

4) Mark D. West, "The Puzzling Divergence of Corporate Law: Evidence and Explanation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50 U. Pa. L. Rev. 527 (2001).

5) "우리 상법은 일본에서 재벌해체와 미국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전후미군사령부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1950년 개정된 일본상법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최기원,

Corporation Act of 1933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이 Illinois주 회사법을 계수하게 된 과정은 어떠하였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99년의 일본상법은 독일법이 그렇듯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구현한 상당히 반주주적인 자세(relatively anti-shareholder stance)를 취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세계2차대전 후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미군정청은 주식을 분산시키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면서 전시의 재벌체제를 해체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경제과학국 반트르스트 및 카르텔부(經濟科學局·反トラストおよびカルテル部)의 반트르스트 입법과에 부여하였다. 당시 반트르스트 입법과에는 미국 법무부의 Posey T. Kime 판사와⁶⁾ Lester Nathan Salwin 변호사가⁷⁾ 근무하고 있었다. Salwin은 일본 독점금지법과 노동조합법을 입안하였고, 차차 상법과 같은 기본법의 개혁으로 관심을 옮겼다. Salwin 변호사의 후임은 Irving Eisenstein이었는데, 두 사람 다 독일 유대계 이민자였으며, Illinois 주립대학 출신에다 Chicago에서 법정변호사(trial lawyer)생활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법의 개정에 참여한 5명 중 Robert W. Hudson 중위를 포함하여 3명이 모두 Illinois주 변호사였다.⁸⁾ 그러니

“상법개정의 새로운 문체점 3”, 『법률신문』 제1203호(1977. 5. 9.) 7면.

6) Posey T. Kime 판사는 1896년 Indiana주 Petersburg에서 출생하여 Purdue University의 농과대학에 1년 수학한 후 North Dakota에서 1년간 교편생활, 자동차 판매, 철강공장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가 1917년 입대,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포병으로서 유럽에 참전하였다. 종전 후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에 입학하여 1922년에 졸업하였고, Evansville에서 홀로 개업하여 변호사활동을 하다가 James H. Meyer와 law firm인 Kime and Meyer를 설립하였다. 1930년 Kime은 인디애나 항소법원(the Indiana Appellate Court)의 판사로 선출되어 1931. 1. 1.부터 1938. 9. 까지 근무하였는데, 1933. 5. 부터 1936. 5. 까지 주심판사로 활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Kime은 워싱턴 D.C.의 연방전력위원회(the Federal Power Commission: 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전신)에 근무하였다. 종전 후 일본에서 1년을 근무하면서 경제입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1952년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근무하였으며, 1958. 6. 8. 병사하였다.

7) Lester Salwin 변호사는 1911에 출생하여 오하이오 대학을 수석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과학국 반트르스트 및 카르텔부의 반트르스트 입법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본 독점금지법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법의 개정에도 크게 관여하였다. 1984년 사망하였다.

8) Mark D. West, *op. cit.*, 539.

개정상법은 자연 Illinois 주 회사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Salwin은 노련한 소송전문가였으며⁹⁾ 많은 논문을 발표한¹⁰⁾ 학자이기도 했고,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매우 다혈질이고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가 작성한 1949년 1월 25일자 6가지 메모(실은 16가지의 메모라고 한다)가 일본상법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 6가지 메모에는 (1) 주주의 장부열람권 보장, (2) 주식양도의 자유, (3) 의결권(의결권신탁, 주주명부, 위임장, 종류주식 포함), (4) 주가희석(dilution)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5) 소수주주권 보호(능력 외 행위, 이사·감사 및 임원의 의무, 기업인수와 합병, 각종의 소 포함), (6) 외국회사에 대한 규제 등을 비롯하여 많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1949년 6월에 입법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8월에 상법분과가 구성되면서 이 메모에 따라 연구 및 상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¹¹⁾ Salwin은 6가지 메모에 대한 입법지침으로서 1947년의 Illinois주 사업회사법(the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47)의 해당 부분을 예로서 제시하였다. 개정과정에서 일본측 위원으로 동경대학의 상법교수이던 鈴木竹雄(Takeo Suzuki)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²⁾ 개정과정에서는 Salwin과 鈴木교수 간의 타협에 의하여 최종안이 확정된 예가 많다. 鈴木교수는 독일법체계에 영미법적 규정이 혼입되는 것을 억제하려 애썼지만 그것은 불가능하

9) 그가 담당하였거나 제기한 유명한 소송으로 Gold-Form, Inc. v. Bowles, 152 F.2d 107 (Emer. Ct. App. 1945); Mevorah v. Bowles, 151 F.2d 766 (Emer. Ct. App. 1945); DeMotte v. DeMotte, 4 N.E.2d 960 (Ill. 1936) 등이 있다.

10) Salwin이 발표한 논문으로, Lester N. Salwin, "Japanese Anti-Trust Legislation", 32 Minn. L. Rev. 588, 588 (1948); Lester N. Salwin, "The New Commercial Code of Japan: Symbol of Gradual Progress Toward Democratic Goals", 50 Geo. L.J. 478, 512 (1962); Lester N. Salwin, "Uncertain Nationality Status of German Refugees", 30 Minn. L. Rev. 372, 377 (1946). 이 외에도 판례평석 등이 다수 있다.

11) Mark D. West, *op. cit.*, 540-541.

12) 鈴木竹雄(Takeo Suzuki: 1905-1995)는 일본의 대기업인 아지노모토 식품회사의 창립자의 아들이자 1931년부터 1986년까지 동경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고, 그 이후 일본 소피아 대학에서 잠시 근무하였으며, 1957년부터 1959년까지는 동경대 법대 학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전후 6회나 상법개정에 참여하였고, 여러 번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본 상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많은 저술을 통하여 상법학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되었다. 제자로는 그 이름도 쟁쟁한 北澤正啓, 平出慶道, 竹内昭夫, 前田庸, 黒川俊彦 등이 있다.

였다.¹³⁾

그러나 Illinois주 회사법이 입법자들의 개인적인 취향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당시 Illinois주 1933년 회사법은 이미 미국에서도 선구적인 획기적인 법률(a landmark statute)로 간주되고 있었고¹⁴⁾ 가장 최신의 주회사법(the most modern of state statutes)이었다.¹⁵⁾ 당시로서는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도 중요한 발전이다. 예컨대 자본은 “capital stock”으로, 주식을 “share stock”으로 표현하던 것을 각각 “표시자본”(stated capital) 및 “주식”(shares)으로 표현하였다(동법 제2조).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서도 은행, 보험 및 철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동법 제3조), class voting(동법 제54조) 및 정기주주총회(제26조) 등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후에 MBCA의 모델이 된 것이다. Illinois주 회사법은 회사법의 주요 원칙과 접근방법을 정한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입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Illinois주 회사법 초안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이 MBCA 제정을 위한 기초위원회 위원이었던 점도 MBCA가 Illinois주 회사법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¹⁶⁾

일본이 1950년 개정상법에서는 Illinois주 회사법을 모델로 삼았지만, 그 이후의 개정에서는 MBCA를 모델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우리 회사법도 처음에는 Illinois주 회사법과 유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게 되었으나, 후에는 일본법과 마찬가지로 MBCA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Illinois주 회사법 및 MBCA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우리가 계수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13) 鈴木교수가 “완전히 미국법으로 가는군요. 대륙법체계는 어떻게 할겁니까? 대륙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라고 항변하였을 때, Salwin은 “대륙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으면 오스트리아 장교를 불러 주겠다. 그가 대륙법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라고 힐난하면서, 鈴木교수가 몇 마디 더 중얼거리자, Salwin은 “Suzuki, 당신들 모두 빨갱이지!”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14) William H. Painter, *op. cit.*, 635.

15) Charles W. Murdock, “Why Illinois? A Comparison of Illinois and Delaware Corporate Jurisprudence”, 19 S. Ill. U. L.J. 1, 1 (1994).

16) Whitney Campbell,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Bus. Law.* July 1956, at 98, 100.

2. 한국회사법의 최근의 개정 동향

이와 같이 우리 회사법이 일본을 통하여 미국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였는데, 그 근본은 독일법적 색채가 짙다. 그런데 독일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 보호 중심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지향하는 법률이며, 이에 비하여 미국법은 주주보호중심의 법률이다.¹⁷⁾ 최근에 한국 상법도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고, 현재에도 개정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의 개정의 특징은 좀 더 미국 회사법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채권자보호 중심사상에서 벗어나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shareholder capitalism)으로 점점 기울어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 회사법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¹⁸⁾

3. 미국법에의 접근현상에 대한 평가

미국법은 꾸준히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 주회사법 중에서도 델라웨어 주 회사법은 가장 규제와 감독이 느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와 감독이 허술한 미국에서 불행하게도 21세기 초 엄청난 기업부정 사례가 터져나왔다. 미국의 엔론, 월드콤, 루슨트, 쉘스트, Global Crossing 등의 몰락과 Krispy Creme의 회계부정사건, 캐나다의 브리-엑스 미네랄 주식회사 사건,¹⁹⁾ 독일의 Volkswagen 섹스 스캔들, 영국의 베어링즈 은행사건,²⁰⁾ 일본의 1972년 Lockheed 사건과, 2005년 다스킨 고기

17) 최준선,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7. 8., 169면.

18) 최준선, 상계논문, 188면.

19) 1993년 8월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탐사회사였던 Bre-X Minreal Ltd.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Busang River에서 시굴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공시하였다. 시굴 표본의 분석평가 결과, 자원 부존량 추정치가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 초에 이르러서는 매장량이 전세계 매장량의 약 3~4%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5년 몇 센트에 불과하였던 주가가 수백배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개발 협상을 Suharto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맡김으로써 비난을 받았다. 1997년 3월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탄로났다. 금광발견은 거짓이었고, 주식은 마침내 휴지가 되었다: <http://geology.about.com/cs/mineralogy/a/aa042097.htm>.

20) 1995년초 영국의 베어링 은행(Baring's bank)의 싱가포르 현지법인 先物會社 'Bar-

만두 무허가 첨가물 사건,²¹⁾ 2006년 후지야제과 식중독 사건,²²⁾ 2007년 아카후쿠 모찌 제조일자 위조사건, 2007년 센바깃초 체인 음식물 재활용 사건,²³⁾ 건축자재 생산판매의 대기업 니치아스의 인체에 치명적인 청석면을 사용하여 석면포를 생산, 판매해 온 사건, 쿠리모토 철공소의 고속도로 다리에 들어가는 철재로 부실철재를 공급하였던 사건, 라이브도어의 허위결산보고, 내부자거래 및 일본방송주식의 대량매집 등 주문으로 호리에 사장과 주요 임원 및 공인회계사가 실행판결을 받은 사건 등 비도덕적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기업이 거의 다 한 번씩 홍역을 치른 각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비자금사건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기업부정사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언론이 그 종업원이나 지역사회, 나아가 다른 기업에 미친 해악은 과연 주주이익의 극대화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를 지향하는 주주중심주의(theory of shareholder primacy; shareholder exclusivity model)모델의 기업 지배구조가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반면에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theory)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었다.²⁵⁾

ings Futures'의 젊은 선물거래인 니콜라스 릭슨이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MEX)를 거점으로 파생상품의 하나인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였으나, 닷케이 주가지수 '日經 225'가 1995년 1월 고베지진 등의 영향으로 폭락하여, 8억 2천 7백만 파운드(미화 14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Barings group이 사실상 파산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의 금융보험그룹인 Internationale Nederlanden Group (ING 그룹)이 1995년 3월 5일 베어링 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NG 그룹은 베어링 은행의 인수대금은 영국 돈 1파운드를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다. 최준선, 『국제거래법』, 2007, 54면.

21) 주식회사 다스킨은 자사의 상품 고기만두에 TBHQ를 첨가하였는데, 회사의 이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고기만두 판매를 계속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이에 주주가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2) 1910년에 창업하여 일본 내 6위로 성장한 제과업체인 후지야는 10년간 식중독 발생은폐 등 식품위생 비리가 폭로된 사건으로, 사장 등 경영진이 사임하였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23) 1인당 식대가 4만 엔에 달하는 일본 대표적 고급요정인 센바깃초에서 최고가의 원산지를 위장하는가 하면, 수년간 손님이 물린 상의 음식을 다른 손님의 상차림에 재활용하여 왔다는 것이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에서 4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24) 小林利治, “平成二〇年みにおける企業法務のと展開課題”, 『商事法務』第1821號, 2008. 1. 5., 93頁.

25)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비교에 관하여는 최준선, 전계논문(상사법연

특히 금융부분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는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다. 규제 완화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이며, 국가적 간섭은 오히려 선순환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그 논리이나, 실제로는 규제완화론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책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엔론의 CEO Kenneth Lay는 규제완화신봉자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⁶⁾ 2007년 미국 sub-prime mortgage crisis와 2008년 global economic crisis의 원인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철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규제완화론자인 Phil Gramm 상원의원이 입안한 1999년의 the Gramm-Leach-Bliley Act (은행현대화법) 때문이라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²⁷⁾ 이 법률은 금융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the Glass-Steagall Act의 주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aul Krugman은 Gramm을 규제완화신봉자(the high priest of deregulation)로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책임 있는 2사람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²⁸⁾²⁹⁾ 다른 한 사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장인 Alan Greenspan이다. Gramm의 처 Wendy Lee Gramm은 Enron이 파산할 당시 Enron의 이사로서 재직하였다. 이와 같은 기업부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업에 대한 감독 및 내부통제제도의 확립과 개선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근년의 상사법 분야의 법 발전의 특징은 “事前規制型”에서 “事後制裁型” 또는 “事後救濟型”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³⁰⁾ 사전규제에서 사후구제로 바뀌는 전제는 신뢰이다. 자기책임하에 신뢰를 쌓아야 하며, 신

구) 참조.

26) 엔론의 CEO 레이는 열성적인 규제완화 주창자였다. 정부 측 경제학자로 일할 때에도 그리고 후에 내무부 차관이 되어 연설할 때에도, 그가 외쳐왔던 대의는 항상 규제 완화 내지 규제철폐였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이주형 옮김, 『버블의 기원』, 2004, 157면.

27) <http://www.politico.com/news/stories/0308/9246.html>.

28) <http://www.youtube.com/watch?v=YwqcLbZJ4HA>.

29) <http://www.youtube.com/watch?v=o-lZcKkKbLM&NR=1>.

30) 小林利治, 전계논문, 93면; 池田唯一, “金融・資本市場制度をめぐる環境と展望”, 『商事法務』 제1821호, 2008. 1. 5., 47頁.

퇴를 상실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활동은 공시의 강화로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율성의 보장과 자기책임의 원리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금융산업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사후구제와 자기책임의 경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한다. 근래에 독일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일련의 개혁입법을 완수하였다.³¹⁾ 미국법에의 접근현상은 피할 수 없다.

III. 2008년 상사법 분야의 발전

상사법 분야의 법발전을 위한 학계간의 노력은 예전과 다를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근래에 기업법 관련 많은 학회들이 탄생되고 발전을 거듭하여, 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발표를 하더라도 상사법, 특히 상법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법의 길은 어려운 것이다. 다행히 2007년 법무부가 그 산하에 상사법무과를 신설하고, OECD 선도국 수준의 선진 상사법제의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상사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에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상사법 관련 많은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8년 8월 4일부터 상법 제5편 해상편이 이미 시행되었는데, 세계 7대 해운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현대화된 해상법을 마련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상법 제3편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재무관리의 자율성도모를 위한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폐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도 폐지될 예정인데, 동 규정을 상법 회사편으로

31) 최병규, “독일의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 『법조』, 제548호, 2002. 5, 34면 이하; 최병규, “독일의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안”,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5, 151-175면.

수용하여 상법 회사편의 완결을 기하려 한다. 과거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이 ‘조직법’이 아닌 ‘거래법’의 일종인 증권거래법에 혼재되어 있어서 다소 비논리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바로잡아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회사의 조직관련 규정은 상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없이 조문만의 이동으로는 회사편 개정의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에 상법 회사편의 지배구조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후술).

보험편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 및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고, 보험목적의 양도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효과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상법총칙 및 상행위편 개정안에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였다.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 신설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객·화주의 권익을 옹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경영권방어수단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09년에는 신탁법제 및 도산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회사법 개정작업을 위한 상시개정체제를 운영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와 같이 수년에 한번 개정되는 체제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다. 과거에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인 수습책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입법형태였다면, 이제는 상시 예방적 자세를 취할 만큼 우리의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

IV. 한국회사법의 개정방향

1. 창업절차의 간소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종합순위는 세계 30위이며, 창업환경부문에서는 178개국 가운데 110위를 마크하였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10단계, 17일간이 소요되어 OECD 평균 6단계, 14.9일보다 훨씬 번잡하며, 창업최소자본금도 1인당 GNI의 296%로, OECD 평균 32.5%보다 훨씬 높다. 법인등록비용도 평균 300만원인데, 등록세, 각종 수수료, 주택채권매입, 보험료, 공증비용 등을 포함한다. 창업을 위하여 정관공증(공증인), 주금납입증명(은행), 법인등록세(시, 군), 등기(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4대보험(4개 기관), 노동신고(노동사무소)를 거쳐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one-stop 시스템하에서 한 곳에서 창업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만도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 37종에 이르고, 창업부분에서의 자료공유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로 데이터가 연동되지 못하여 중복되는 서류도 21종이나 되며, 동일한 서류를 가는 곳마다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자부심은 이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예컨대 ‘소기업확인서’는 유사상호확인, 자본금요건 등 창업과정에서 수회 제출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온다. 혹시 공장이라도 설립하려면 시일이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인허가 반려 또는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 담당공무원의 무리한 법 적용 등 평균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 외에 수도권 총량규제, 수질오염 총량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법 등 각종의 과잉규제와 너무나 복잡한 법률 및 행정절차로 인하여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³²⁾ 나아가 상법의 회사

설립관련 규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설립비용과 보수(상법 제290조 제4호) 중 설립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창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설립비용은 모든 회사가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부분인데, 이 비용은 변태설립사항이므로 까다로운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이지 아니한 비용이라든지 자본에 비하여 금액이 몹시 큰 경우 등의 경우에 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창업관련법규를 정비하려 하고 있는데,³²⁾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2. 지배구조의 개선

(1) 이사와 집행임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

회사의 지배구조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법개정안에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업무의 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상당부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실무에서 널리 칭하여지고 있는 CEO 등 회사의 임원제도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그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집행임원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등기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미치지 못하며(이사의 경우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되지 아니한 채 대기업의 이사로 호칭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지경이다),³⁴⁾ 그 책임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책임(상법 제401조의 2)에 의하여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는 이사회에의 본래의 감독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업무의 결정과 집행은 집행임원에게 맡기자는 취지로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분리에 따른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와 이 제도의

32) 조유현, “창업절차와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방안”, 『기업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2008. 4. 24, 133면.

33) 조유현, 상계 주제발표문, 123면 이하 참조.

34) 예컨대 삼성전자(주)의 등기이사는 13명에 불과하나, 비등기이사는 6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착을 위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감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재정비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는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상법이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에 관한 규정을 대폭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상법 제415조의 2 제6항)은 매우 조악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신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질적으로 이사인데도 이를 독립기관인 감사와 동일시한 것부터가 많은 不整合을 야기하고 있다. 회사법상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만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다.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이와 같이 복잡한 규정을 유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3)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자로서 감사의 임무에 대한 인식제고

감사의 임무 중에 내부통제제도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부통제제도의 통할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주요 임무인데,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94년에 채택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3.05(대규모 공개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는, “모든 대규모 공개회사는 회사의 재무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그 내부통제 및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이사회와 감독기능을 보조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Principle §3A.02(소규모 공개회사에³⁵⁾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밝히고 있을 뿐, 내용은 대

35) ‘소규모 공개회사’의 정의는 Principle §1.35에서 대규모 공개회사 이외의 공개회사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규모 공개회사의 그것과 유사하다. 또한 Principle §3A.03은 감사위원회가 보유·유지하여야 할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사실무에 있어서 관행으로서 이하의 점이 권장된다.

제3.05조(대규모 공개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 또는 제3A.02조(소규모 공개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 기하여 설치된 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것을 행하여야 한다.

(a) ~ (f) 생략.

(g) 외부감사인 및 상급 내부감사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와의 협의를 통한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

또한 일본의 경우는 회사법과³⁶⁾ 금융상품거래법 두 곳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이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문제가 당면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그 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³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면 회사법상의 지배구조부분 중 감사(감사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감사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

36) 일본 회사법 제362조 및 회사법 시행규칙 제100조 참조.

37) 양자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내부의 위험을 통제한다는 최종적인 목적은 같으나,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회사법이 요구하는 내부통제는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구축이 주요 목적이며, 그 대상 또한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미친다.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는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구축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후자는 재무보고의 적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은 대회사 및 위원회설치회사의 의무사항인 데 비하여,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는 주권상장회사 및 장외등록회사의 의무이다. 또한 회사법상의 내부통제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칠 뿐이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는 재무보고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정비 및 운용뿐만 아니라, 감사로부터 적정의견을 얻지 못하면 회사의 결산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효경, “일본의 감사제도의 최근 동향”,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79면.

38)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7, 290면; 안수현,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2권, 2007, 31면.

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감사보조기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회사법에 두고 있고, 동경증시 제1부에 상장되고 있는 회사의 93.9%가 회사 내에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가지고 있고,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3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100%가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가지고 있다.³⁹⁾

3. M&A의 활성화

(1) MBO와 EBO에 대한 관심 촉구

근래에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호적 M&A는 물론 적대적 M&A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fund에 의한 적대적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⁴⁰⁾ 금년 초 지식산업부는 M&A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한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게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너무 없지 않는가 하는 경제계의 불만이 높다. M&A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M&A 방어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반된 두 명제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영국의 경우 지분의 30%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전부매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⁴¹⁾ 미국은 right plan(후

39) 小林利治, 전계논문, 95頁.

40) 최준선, “적대적 M&A에 대한 환상”, 서울경제신문 2008. 5. 16. 시론.

41) 일본에서는 영국의 시티·코드를 참고하여 만든 강제적 공개매수제도 혹은 1/3 Rule이라는 것이 있다. 본래 60일간에 11명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여 주식보유비율이 5%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매입은 공개매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0년 개정증권거래법(현재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매수 후의 주식보유비율이 1/3을 넘게 되는 매수는 60일간에 10명 이하의 자로부터 매수하였다더라도 공개매수에 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1/3 Rule이 영국의 시티·코드 및 그 후의 EU지침과 다른 점은 장내매입에 대해서는 1/3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점 및 공개매수일반에 있어서 응모 주권을 전부 매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전부매수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본래 공개매수의 규제는 매도권유를 받는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1/3 Rule은 매도권유를 받지 않은 주주에게 지배권 프리미엄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黒沼悦郎,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와 시사”, 증권법학회, 2006년 제1차 특별세미나(2006. 5.) 자료집 참조; 武井一浩 司會 座談會, “會社法と金融商品去來法の交錯と今後の課題”, 『商事法務』 제1822호(2008.1.25.), 4頁 이하 참조.

술)을 이용하여 기업 스스로 자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rule이 존재하지 않아 적대적 M&A의 경우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M&A 수단으로서 경영진이 기업이나 사업부문을 매수해 독립하는 이른바 Management Buyout (MBO) 사례가⁴²⁾ 늘어나는 추세이다.⁴³⁾ MBO는 본래 영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7000여건의 MBO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업계승 등에 시사점이 매우 클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MBO는 창업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현 경영진에게 사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회사가 그룹기업의 자립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가변동이나 매수 리스크 등을 회피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개혁을 행하기 위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MBO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를 고가에 매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회사를 최대한 저가로 매수하여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는 대표적인 이익상충행위로서 바로 자기거래의 문제에 해당된다.⁴⁴⁾ 따라서 불투명성 또는 합리성의 결여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매수가격의 자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경영진이 회사의 분기실적 예상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발표하여 주가를 낮추는 것이다. MBO를 통하여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 와중에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작을 할 경우, 기존의 주주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주가결정 및 MBO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42) MBO란 기업의 현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회사 또는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MBO는 기존 임직원이 신설회사의 주요 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인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43) 新原浩朗, “わが國のコーポレート・システム現狀認識と課題”, 『商事法務』, 제1821호 (2008.1.5.), 60頁 이하 참조.

44) 新原浩朗, 상계논문, 61頁 참조.

고 본다. 일본에서는 MBO를 실시함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실무상의 대응에 관하여 보고서와 실무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⁴⁵⁾ 그리고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MBO의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보호 문제가 있다.⁴⁶⁾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MBO를 성공시킨 사례로서, 외환은행의 금융주선을 통해 필라 코리아(Fila Korea)가 모회사인 필라 글로벌(Fila Global)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⁴⁷⁾

한편 종업원에 의한 기업인수(Employment Buy-Out, EBO)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메디슨이 토종 사모투자펀드인 칸서스자산운용과 이 회사 주식주조합간의 제휴로 정상화된 사례가 있으나,⁴⁸⁾ 그 이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2)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신주예약권제도(warrant)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right plan이 이용된다. 이는 회사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평상시에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적대적 매수자가 주식을 사 모으는 경우, 매수자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고 매수자의 지주비율을 극적으로 희석시키는 방법을 말한다.⁴⁹⁾ 그러나 right plan의 최종목적은 매수방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촉구하는

45) 2007. 8. 2. 기업가치연구회 보고서 및 2007. 9. 4. 실무지침 참조.

46) 손영화, “LBO(Leveraged Buyout)/MBO(Management Buyout)에 관한 법적 문제”, 『증권법연구』, 제8권 제2호, 2007.

47) 이로써 한국외환은행은 투자금융부문 금융전문지인 IFR Asia지로부터 ‘South Korea Loan’ 부문 ‘올해의 달’(Deal of the Year)을 수상하였다.: 머니투데이 2008. 2. 20.

48) 파이낸셜 뉴스, 2005. 11. 28.

49) Shareholder Rights Plan은 신주를 구입하는 권리(right)를 사용한 방어수단을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주예약권을 활용한다. 신주예약권은 통상 전 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보유자(적대적 매수자)에게는 신주예약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적대적 매수자의 지분비율이 강제적으로 저하되어 당초 목적인 지분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에서 독약조항(poison pill)이라고도 한다.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right plan이 발동되는 예는 드물다고 한다.⁵⁰⁾ 이사가 매수자의 제안을 검토하고 주주에게 경영방침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을 위한 시간을 벌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불독소스(Bulldog Sauce) 사건에서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매수방위책이 발동되어, 미국에서는 좀처럼 발동되지 아니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⁵¹⁾ 불독소스 사건에서는 기존의 1주당 3주의 신주예약권을 부여한 다음 매수자인 미국계 펀드 스틸파트너스(Steel Partners Japan)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1주당 보통주 1주씩의 무상신주를 발행해 주었고, 스틸파트너스에게 배정된 신주예약권을 공개 매수가격의 4분의 1인 주당 396엔에 강제취득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⁵²⁾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매수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고 금전을 교부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는 21억엔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수자로서는 주가가 희석된 만큼 금전으로 보상받으므로 결국 큰 피해는 없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언제든지 소액의 명목적인 금액(통상 1센트)만 지급하고 상환하여 소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poison pill이 발동되면 매수자가 큰 손해를 입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 방위책으로서의 포이즌 필이 발동되기 전에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나, 일본에서는 매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행된 신주를 회사가 매입하므로 매수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크지 않고, 따라서 바로 신주예약권이 발동될 여지가 크며, 불독소스사건에서는 실제로 발동되었다.⁵³⁾ 우리가 poison pill 제도나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poison pill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주예약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 발동되도록 하는 것보다 대화의

50) 新原浩朗, 전계논문, 63頁 참조.

51) 이지수, “일본의 경영권방어 사례와 주식시장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 - 일본의 불독소스 사건을 중심으로 -”, 『기업지배구조연구』 2008 Autumn, 87면 이하 참조.

52) 이 사건은 일본전통식품회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본 내의 분위기에 더하여, 매수자를 ‘기업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남용적 매수자’로 규정한 법원이, 위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성·상당성 내지 합리성이 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도 불공정발행이 아니며, 매수자의 주식을 회사가 강제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불복한 매수자의 상고를 최고법원이 기각하였다.: 日本最高決 2007.8.7. 民集 제61권 제2호 2215頁.

53) 新原浩朗, 전계논문, 63면 참조.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류주식의 다양화

우리나라에서는 종류주식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종류의 설계가 원칙적으로 회사에 일임되어 있다. 예컨대 전술한 미국의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 §6.01(c)(1)은 회사는 special, conditional, or limited voting rights, or no right to vote(의결권에 관한 특별주식, 조건부의결권 주식, 의결권제한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회사가 임의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종류주식의 발행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 복수의결권주식, (2) 부분의결권주식, (3)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의결권주식, (4) 의결권제한주식, (5) class voting 주식 (6) 완전무의결권보통주식까지 인정된다. 영국에서는 (1) 복수의결권주식, (2) 부분의결권주식, (3) 차등의결권주식 (4) 의결권제한주식, (5) 완전무의결권 보통주식이 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원주제도, 잉여금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의결권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주식), 주식양도에 있어서 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양도제한부주식),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취득청구권부주식), 회사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주주로부터 강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취득조항부주식),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전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전부취득조항부주식),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사항 중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거부권부주식),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임원선해임부주식, class voting 주식) 등 총 9가지 종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⁵⁴⁾

미국의 google사는 그 주식을 상장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배분할 class A 주식과 그 창업자들이 보유할 주식인 class B 주식 2종의 주식을 발행

54) 권중호, “종류주식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8년 제2차특별세미나(2008. 08) 자료 2면.

하고, B주식에는 A주식의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창업자 Larry Page와 Sergey Brin 및 주요 이사 및 임원들의 의결권을 합하면 약 80%의 의결권을 가진다. B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있으며, 배당률 등 수치적 valu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 포드 가문은 7%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에릭슨과 SAAB 대주주는 1,000배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나이키, 펩시 등 미국 내 200여 개 기업, 미국 상장기업의 22%가 종류주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64%가 복수의결권주식 이용하고 있다.⁵⁵⁾ 복수의결권주식은 M&A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창업자가 장기적·창조적 어프로치를 채택할 수 있고 기업가의 개성적인 문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동시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황금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황금주(golden shares)란 주식의 소유비율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통상의 주식에 비하여 우월적인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권리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예컨대 해산, 합병, 영업양수도,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에 대한 거부권(right of veto)을 부여하거나, 임원임면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황금주는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허용되어 왔으며, 일본도 2005년 신회사법에서 거부권부주식과 임원임면권부주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유럽연합 내에서 황금주 제도는 폐지되어가는 추세이다.⁵⁶⁾ 종류주식의 확대, 황금주 및 초다수결의제에 대하여는 현재 M&A 방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자율적인 주식설계의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2년 엔론의 미증유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의 여파로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가 제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

55) 新原浩朗, 전계논문, 64頁 참조.

56) 송중준, “Poison Pill의 활용을 위한 Warrant의 도입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8년 제2차특별세미나(2008. 08)자료, 20면.

시금 문제되었다.⁵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가 강조되는 만병통치약이다.⁵⁸⁾ 21세기 초에 동시 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부정사건의 배후에는 탐욕과 해이해진 도덕성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때이다. 이제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⁵⁹⁾ 특히 지속가능성장과 관련하여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⁶⁰⁾ 지속가능한 장기이익을 확보하고 기업과 사회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법과 법체계(law and legal systems), 목적단체를 통한 규제(affinity group regulation), 자기규제(self-regulation), 사회적 전통, 전통 및 관습(mores, traditions, and customs), 대중매체의 감시(media monitoring) 및 시민사회 행동주의(civil society activism) 등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⁶¹⁾

당면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가에 있으나,⁶²⁾ 필자의 견해로는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다소 희생할 수 있는 경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통하여, 그리고 기업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⁶³⁾

57) Lindsay J. Thompson, "The Future of Enterprise Regulation: Corporate Social Accountability and Human Freedom", 3 J. Bus. & Tech. L. 357 (2008); Kent Greenfield, "Corporate Ethics in a Devilish System", 3 J. Bus. & Tech. L. 427 (2008).

58) 최준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2005. 12., 475면.

59) Lisa M. Fairfax, "Easier Said Than Done? A Corporate Law Theory for Actualizing Social Responsibility Rhetoric", 59 Fla. L. Rev. 771 (2007); Edwin M. Epstein, "The Good Company: Rhetoric or Rea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Business Ethics Redux", 44 Am. Bus. L.J. 207 (2007).

60) Jeff Civins/Mary Mendoza,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A Legal Perspective," 71 Tex. B.J. 368 (2008); Janet E. Kerr, "Sustainability Meets Profitability: The Convenient Truth of How the Business Judgement Rule Protects a Board's Decision to Engage in Social Entrepreneurship", 29 Cardozo L. Rev. 623 (2007).

61) Edwin M. Epstein, *op. cit.*, 210.

62) 입법례로 MBCA §3.01(13), §3.01(14), §3.01(15), ALI's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2.01; 중국회사법 제5조.

63) 최준선, 전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471면 이하 참조.

V. 결어 - 국제적 환경에의 대응

현재 1929년의 금융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 또는 신용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어서, 다른 문제들은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 문제를 제외한, 장래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기업회계혁명

엔론사태는 Sarbanes-Oxley Act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의 30년간에 걸친 회계전쟁에서 유럽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미국이 미국회계기준(U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S-GAAP) 대신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수용하기로 하였다.⁶⁴⁾ 우리나라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이⁶⁵⁾ 우선 2009년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게 된다.⁶⁶⁾

2. E-Discovery제도에 따른 대응

2007년 1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등장한 E-Discovery제도에⁶⁷⁾ 따른 대응도 미국 기업과 특허법이나 기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

64) 三井秀範, “企業會計・ディスクロジャをめぐる動向”, 『商事法務』 제1821호 (2008. 1. 5.), 52頁.

65) 국제회계기준의 일반적인 특징은 발생기준회계와 계속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원칙중심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며 투자자중심의 공시를 요구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기본으로 하는 점이다: 이장규 외 5인 공저, 『IFRS-회계국경이 사라진다』, 2008, 056~061면.

66) 이장규 외 5인 공저, 상계서, 030면.

67) Ralph C. Losey, *E-Discovery: Current Trends and Cases by American Bar Association*, 2008; Jessica DeBono, “Preventing and Reducing Costs and Burdens Associated with E-Discovery: The 2006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59 Mercer L. Rev. 963 (2008).

는 국내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⁶⁸⁾ E-Discovery상 매우 중요한 조항인 FRCP Rule 26은 보호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disclosure)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Discovery의 중요 항목은 이메일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이다. E-Discovery로 인하여 자료의 분량이 달라진다. 과거 수년간의 수십만 건의 데이터 검색 및 검토비용은 엄청날 것임이 틀림이 없다.⁶⁹⁾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 관계된 국내 기업은 전자정보관리정책을 세우고 전자정보를 indexing하여 빠른 시간 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3. U.N. Global Compact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여 인권과 근로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수질오염과 난개발로 환경을 악화시키며 자원을 착취하고 때로는 무기를 공급하여 내전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1999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을 글로벌 협약(the Global Compact)을 제안하여 이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4대부문 10대원칙(the ten principles)을⁷⁰⁾ 준수할 것을

68) 2005년 미국 월가의 초대형 금융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레블론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6억 달러를 배상하였다. 패소원인은 법원의 증거공개요청(discovery)에 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패소원인이다. 법원은 자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모건스탠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Z4 테크놀로지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250억 원을 배상하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Z4 테크놀로지에서부터 이메일과 데이터베이스 증거공개요청을 받았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9) Rowe Entertainment v. The William Morris Agency, 205 F.R.D. 421 (S.D. N.Y., 2002).

70)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index.html>.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 존중하여야 하며, 2.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 labour standards>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하고,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6.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하여야 한다.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하며, 8.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하여야 하고, 9.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여야 하며, <반부패: anti-corruption> 10. 착취 및 뇌물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부패에 대항하여야 한다.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레일, KT 등이 참여 하고 있다. 이 협약 자체가 강제성의 결여 등 내재적 한계가 있으나,⁷¹⁾ 이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회사법의 계수, 상사법의 개정방향, 회사법의 개정방향, 기업 창업절차, 기업 지배구조, 기업의 인수와 합병, 기업의 사회적 책임

71) Evaristus Oshionebo, “The U.N. Global Compact and Account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Separating Myth from Realities”, 19 Fla. J. Int'l L. 1 (2007).

참 고 문 헌

-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상)』, 2006.
- 권종호, “종류주식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8년 제2차 특별세미나자료, 2008. 8.
-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이주형 옮김, 『버블의 기원』, 2004.
-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7.
- 손영화, “LBO(Leveraged Buyout)/MBO(Management Buyout)에 관한 법적 문제”, 『증권법연구』, 제8권 제2호, 2007.
- 손주찬, 『상법(상)』, 2004.
- 송종준, “Poison Pill의 활용을 위한 Warrant의 도입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8년 제2차특별세미나자료, 2008.8.
- 안수현,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2권, 2007.
- 이기수·최병규·조지현, 『회사법』, 2008.
- 이장규 외 5인 공저, 『IFRS-회계국경이 사라진다』, 2008.
- 이지수, “일본의 경영권방어 사례와 주식시장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 - 일본의 불독소스 사건을 중심으로 -”, 『기업지배구조연구』, 2008.
- 이효경, “일본의 감사제도의 최근 동향”,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 조유현, “창업절차와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규제 개선방안”, 『기업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2008. 4. 24.
- 최기원, “상법개정의 새로운 문제점 3”, 『법률신문』, 제1203호, 1977. 5. 9.
- 최병규, “독일의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 『법조』, 제548호, 2002. 5.
- _____, “독일의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안”,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5.
- 최준선, 『회사법』, 2008.

- _____, 『국제거래법』, 2007.
- _____,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7. 8.
- _____,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2005. 12.

- 小林利治, “平成二〇年みにおける企業法務のと展開課題”, 『商事法務』 제1821호, 2008. 1. 5.
- 池田唯一, “金融・資本市場制度をめぐる環境と展望”, 『商事法務』, 제1821호, 2008. 1. 5.
- 武井一浩 司會 座談會, “會社法と金融商品去來法の交錯と今後の課題”, 『商事法務』 제1822호, 2008.1.25.
- 新原浩朗, “わが國のコーポレート・システム現狀認識と課題”, 『商事法務』, 제1821호, 2008.1.5.
- 三井秀範, “企業會計・ディスクロジャをめぐる動向”, 『商事法務』, 제1821호, 2008. 1. 5.

- Charles W. Murdock, “Why Illinois? A Comparison of Illinois and Delaware Corporate Jurisprudence”, 19 S. Ill. U. L.J. 1, 1994.
- Edwin M. Epstein, “The Good Company: Rhetoric or Rea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Business Ethics Redux”, 44 Am. Bus. L.J. 207, 2007.
- Evaristus Oshionebo, “The U.N. Global Compact and Account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Separating Myth from Realities”, 19 Fla. J. Int'l L. 1, 2007.
- Janet E. Kerr, “Sustainability Meets Profitability: The Convenient Truth of How the Business Judgement Rule Protects a Board’s Decision to Engage in Social Entrepreneurship”, 29 Cardozo L. Rev. 623, 2007.
- Jeff Civins/Mary Mendoza,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Social

- Responsibility: A Legal Perspective,” 71 Tex. B.J. 368, 2008.
- Jessica DeBono, “Preventing and Reducing Costs and Burdens Associated with E-Discovery: The 2006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59 Mercer L. Rev. 963, 2008.
- Kent Greenfield, “Corporate Ethics in a Devilish System”, 3 J. Bus. & Tech. L. 427, 2008.
- Lester N. Salwin, “Japanese Anti-Trust Legislation”, 32 Minn. L. Rev. 588, 1948.
- Lester N. Salwin, “The New Commercial Code of Japan: Symbol of Gradual Progress Toward Democratic Goals”, 50 Geo. L.J. 478, 1962.
- Lester N. Salwin, “Uncertain Nationality Status of German Refugees”, 30 Minn. L. Rev. 372, 1946.
- Lindsay J. Thompson, “The Future of Enterprise Regulation: Corporate Social Accountability and Human Freedom”, 3 J. Bus. & Tech. L. 357, 2008.
- Lisa M. Fairfax, “Easier Said Than Done? A Corporate Law Theory for Actualizing Social Responsibility Rhetoric”, 59 Fla. L. Rev. 771, 2007.
- Mark D. West, “The Puzzling Divergence of Corporate Law: Evidence and Explanation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50 U. Pa. L. Rev. 527, 2001.
- Ralph C. Losey, E-Discovery: Current Trends and Cases by American Bar Association, 2008.
- Whitney Campbell,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Bus. Law. 1956. 7.
- William H. Painter, “Introduction: Symposium on the 1983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1985 U. Ill. L. Rev. 635.

William J. Carney, "The Production of Corporate Law", 71 S. Cal. L.
Rev. 715, 1998.

Issues and Prospects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Choi, June - Sun*

The year 2008 celebrates the 60-year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2008 is also the 55th year si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put in force. Since the code was promulgated on January 20, 1962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63, rapid strides have been made in the studies of the commercial law. But still, as the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 and the world changes rapidly whereas the legislation hardly manages to keep up, there is a need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building more advanced commercial law system.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significant changes of commercial law during last 55 years, and will try to define an ideal future prospect.

The Corporate Law part of Korean Commercial Code has adopted several factors of U.S. Corporation Act from beginning, and has become even more similar to U.S. law due to recent amendment. Corporate Law of Korea came to adopt U.S. Corporation Act via Japanese law. The 1950 amendment of Japan's Corporate Law has been affected by the corporate statutes of Illinois. Thus, it is safe to assume that MBCA and Japan's Corporate Law share essentially the same groundwork. Korean Corporate Law, modeling after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at was amended in 1950, eventually is founded on the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 as well. The recent trend in amendment of Korean Corporate Law is that the law is steadily drawing to that of the U.S. law. It is an unavoidable phenomenon for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adopt more factors from the U.S. law.

Further, the writer describes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year 2008 in the field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writer emphasizes the

* Professor of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following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entity in Korea should be more simplified; An improvement in the area of corporate governance is also necessary;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allotment of tasks between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is desirable, as the law will adop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and clarify the committee of inspection should be reorganized and clarified; New significance of the inspector functioning as the assessor of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acknowledged; M&A should be more encouraged; More interest and concern towards MBO and EBO should be taken; Preemptive right (warra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tock types by introducing dual class stocks or golden shares.

As a conclusion the writer points out that many business- related problems can ultimately be converted int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And also points out what international change has been mad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Business accounting reform is drawing near.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E-Discover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amendment of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enterprises to actively take part in Global Compact.

Key Words establishment of business entity, corporate governance, M&A, MBO and EBO, E-Discove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 Global Compact